

2021학년

현장실습
준비교육



목차

1. 실습목적
2.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직무기술서
3. 현장실습 지침
4. 실습기관별 복무규정
5. 실습 중 의사소통 및 태도
6. 직무수행 중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
7.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
8. 개인정보보호
9. 성희롱 예방 교육
10.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
11. 현장실습 지침서 배포

1. 실습 목적



- ✓ **학교에서 학습한 의무기록 정보/ 관리지식을
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한다.**



- ✓ **양질의 보건정보 제공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지식과
기술을 배워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킨다.**

2. 보건의료정보관리사직무기술서

✓ 목적

- 의료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
- 개인건강기록과 진료정보가 정확하고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·운영
- 기관 경영, 교육, 연구 및 공중보건을 위하여 필요 한 정보와 통계를 생성
- 의료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 준거성과 적용기술의 신뢰성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업무 등을 수행
- 국민건강증진에 기여

2. 보건의료정보관리사직무기술서

✓ 직무능력구성

1) 의료정보 완전성 관리

- 의료정보 완결도 관리하기
- 입원시 진단(POA) 관리하기
- 의료정보 작성 시한성 관리하기
- 의료정보 외부평가 항목관리하기

2) 의료정보 전사

- 의료정보 전사시스템 구축하기
- 의료정보 전사하기
- 의료정보 전사완결 관리하기

3) 질환등록

- 질환등록 시스템 구축/관리하기
- 등록질환 정보 수집/보고하기

4) 의료정보보호

-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 준수하기
- 의료정보 보안기술 적용하기
- 의료정보 안전 관리하기
- 의료정보보호 교육하기



2. 보건의료정보관리사직무기술서

✓ 직무능력구성

5) 진료정보 지원

- 환자진료정보 DB 구축/관리하기
- 진료 서비스 지원하기

6) 영양급여 정보관리

- 적정진료정보 관리하기
- 영양급여 심사청구 및 사후관리
- 진료수가 조정 관리하기



7) 의료정보관리 질 향상

- 의료정보관리 질 향상 계획, 활동, 성과 평가, 지원

8) 의료기관평가 지원

- 의료기관인증평가에 따른 의료정보 관리
- 의료적정성 및 의료질 평가에 따라 질환별 의료정보 완전성 관리

2. 보건의료정보관리사직무기술서

✓ 직무능력구성

9) 의료정보 DB 관리

- 의료관련 용어 DB 구축/관리하기
- 진료 관련 DB 구축/관리하기

10) 의료정보 서식 개발관리

- 의료정보 서식 개발하기
- 의료정보 서식 시스템 구축/관리하기

11) 의료정보관련 규정 관리

- 의료정보 관리, 의료정보보호 규정 제·개정하기
- 의료정보 사본발급·열람 규정 제·개정하기



12) 질병·의료행위 분류

- 질병·의료행위 분류코드 모니터링하기
- 질병·의료행위 분류하기

13) 포괄수가제 관리

- DRG/신포괄수가제 분류하기
- DRG/신포괄수가제 분석·활용하기

14) 암등록

- 암등록 시스템 구축/관리하기
- 암등록 정보 생성, 정보활용

2. 보건의료정보관리사직무기술서

✓ 직무능력구성

15) 의료정보 생성 · 지원

- 의료 질 지표 생성/지원하기
- 임상연구 자료 생성/지원하기
- 내·외부 요청 의료정보 생성/지원하기

16) 의료정보 열람 · 제공 · 교류

- 의료정보사본발급 · 열람관리하기
- 진료정보교류 지원하기(기관)

17) 병원통계생성 · 활용

- 퇴원 분석 · 통계 생성/제공하기
- 외래 · 응급 통계 생성/제공하기



3. 현장실습 지침

- ✓ **학생들은 실습지침을 숙지하고 실습에 임해야 한다.**
- ✓ **강의를 통하여 배운 내용을 실제로 시행에 봄으로써 현장에서 활용할 방법을 익힌다.**
- ✓ **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충실습을 받도록 한다.**
 - **질병으로 부득이하게 결석할 경우 학과로 연락해야 하며, 의사의 진단서나 약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.**
 - **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에 응하지 못 할 때에는 신속히 실습지도교수에게 연락한다.**
 - **직계존비속의 기고시에는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.**

4. 실습기관별 복무규정(1)

- ✓ 실습의 목적 그리고 실습생으로서의 위치를 명심한다.
- ✓ 실습병원 및 실습회사의 방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가한다.
- ✓ 모든 근무는 실습병원 및 실습회사의 규정범위내에서 실시한다.
- ✓ 실습생은 실습병원 및 실습회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고, 근무시간을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된다.
- ✓ 실습생은 언어, 복장, 태도에 있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인답게 행동한다.
 -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긴머리는 묶고 단정하게 한다.
 - 단정하고 활동성 있는 옷차림을 한다.
 - 과도한 화장, 액세서리, 헤어스타일은 지양한다.

4. 실습기관별 복무규정(2)

- ✓ **지각 및 조퇴가 3회인 경우 결석 1일로 한다.**
- ✓ **다음과 같은 경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**
 - 실습기관의 비품을 훼손 및 취득한 경우
 - 무단으로 실습을 3일 이상 결석한 경우
- ✓ **반드시 출근시간을 준수한다.**
 - 정해진 출근시간 20분전까지 실습기관에 도착하여 근무환경을 청결히 하고, 여유를 가지고 실습에 임할 준비를 한다. 특별한 사정이 생겨 출근시간늦는 경우 미리(적어도 하루전에) 학교의 실습지도교수와 실습기관의 해당 지도교수님께 연락하여야 한다.

5. 실습 중 의사소통 및 태도



✓ 의사소통



실습지도



실습생



지도교수



환자

5. 실습 중 의사소통 및 태도

✓ 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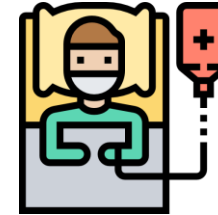
- 친절과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실습에 임한다.
- 정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정중하고 밝게 인사한다.
- 병원내에서 실습생들끼리 몰려다니지 않으며,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지 않는다.
-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병원의 모든 물건을 소중히 다루며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놓는다.
-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다.



6. 직무수행 중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



✓ 출퇴근 중 교통사고



✓ 질병으로 인한 치료

- 1. 실습기관 보고
- 2. 지도교수 보고



✓ 상해사고 발생



✓ 직장내 다툼

7.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



7.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



재계약 결정권을 가진 지역본부 매니저가 “능력이 안 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”, “씨○, 대가리 안 쓰냐?”, “너희들 어차피 갈데 없잖아” 등 잦은 폭언, 협박을 함

대표가 개인 사정은 무시하고 술자리에 부르며 거절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보복함.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에게 짜장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강요도 함



**도 넘은 직장 내 괴롭힘,
우리 회사에도 가해자가 있다 !**



명예퇴직을 거부하자 면벽근무를 지시하고 아무런 계약도 없이 책상에만 앉아 있게 함. 업무 부여를 요청 하였으나, 업무에서 배제된 채 청소나 잡일 등만을 지시

상사의 지시로 흰머리 뽑기, 옥수수 껍질까고 굽기, 라면 끓이기, 안마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온갖 잡일을 함. 먹고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, 남기지도 못하게 함



8. 개인정보보호

- **진료신청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**
 - ✓ **진료신청시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**
 - 인터넷 전화 등에 의한 진료예약시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 - 방문에 의한 진료 신청서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진료과목
 - ✓ **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가능한 진료목적의 범위**
 -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신청, 진단, 검사, 치료, 수납 등의 업무
 - 진료신청 문자발송, 검사결과 통보 등의 업무
 - 진료와 연결된 예방접종
 - 병원 이전 또는 휴업에 관한 정보
 - ✓ **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수집**

8. 개인정보보호

- **진료신청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기준**

- ✓ **진료신청시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**

- 진료기록부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, 주된 증상
- 처방전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처방의약품의 명칭, 분량, 용법, 용량

- ✓ **법률에 따른 의료인의 개인정보 제공의무**

- 진료환자의 진료기록의 송부(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, 의료법 제 21조)
- 감염병환자 등 신고(감염병 예방법 제11조)
- 응급환자의 이송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)
- 감염인 진단 및 검안사실의 신고(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)
- 특정수혈부작용 신고(혈액관리법 제10조)
- 뇌사추정자 신고(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7조)

8. 개인정보보호

Q. 인터넷 진료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나요?

A. 인터넷 예약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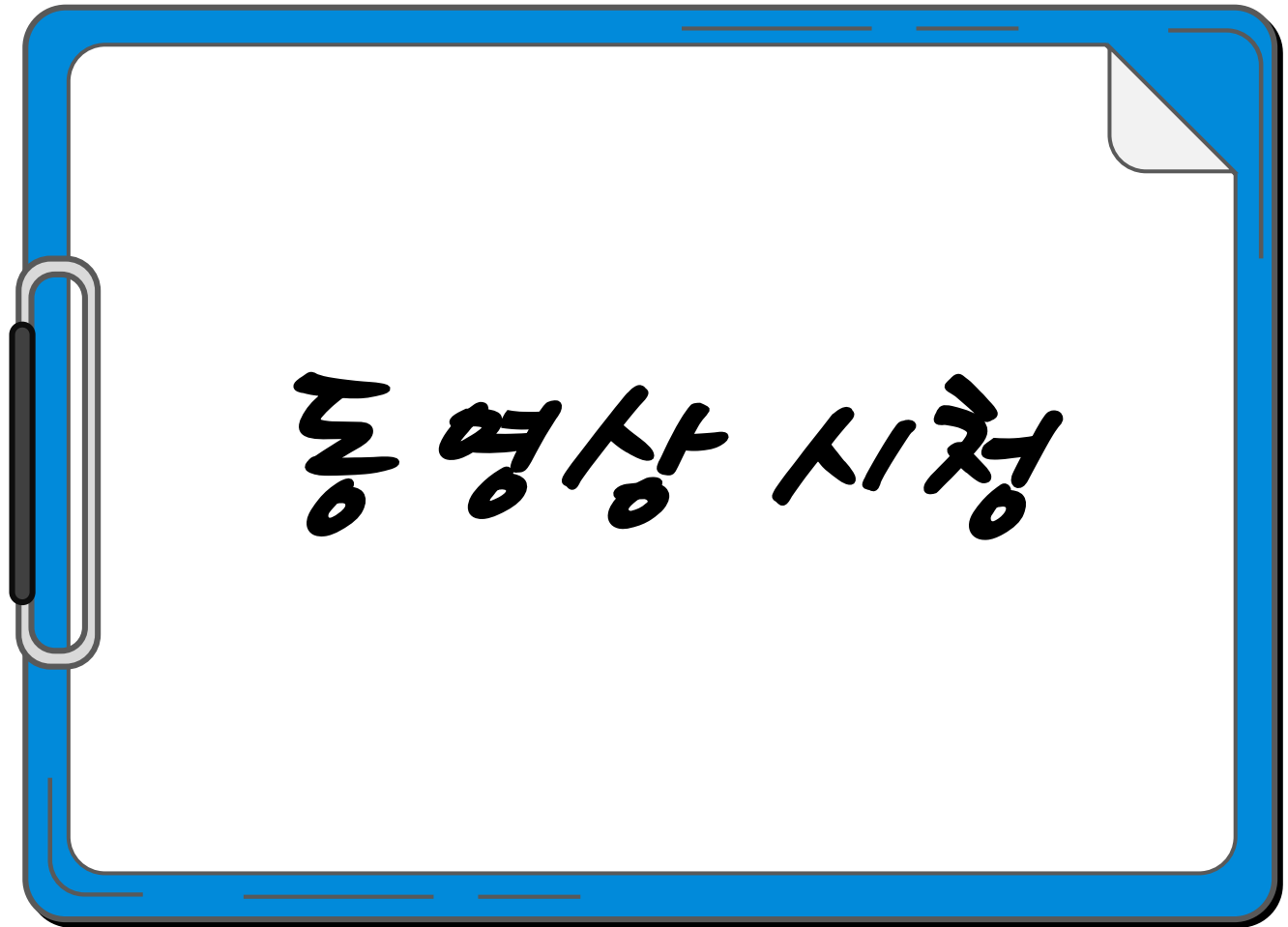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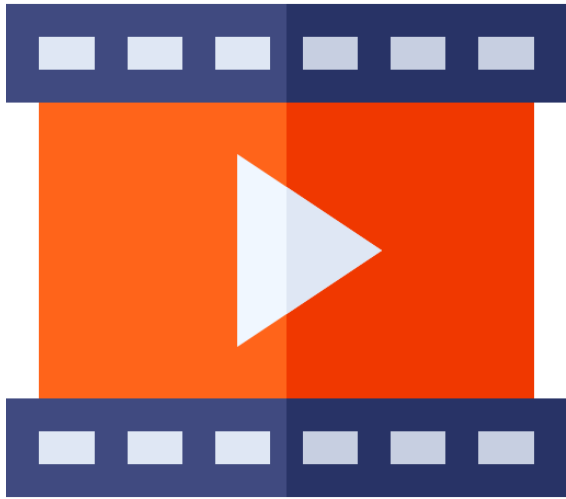
A. 인터넷 진료예약에서는 성명, 전화번호,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,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진료기록부 작성

Q. 예방접종 안내를 위해 환자에게 SMS를 동의없이 보낼 수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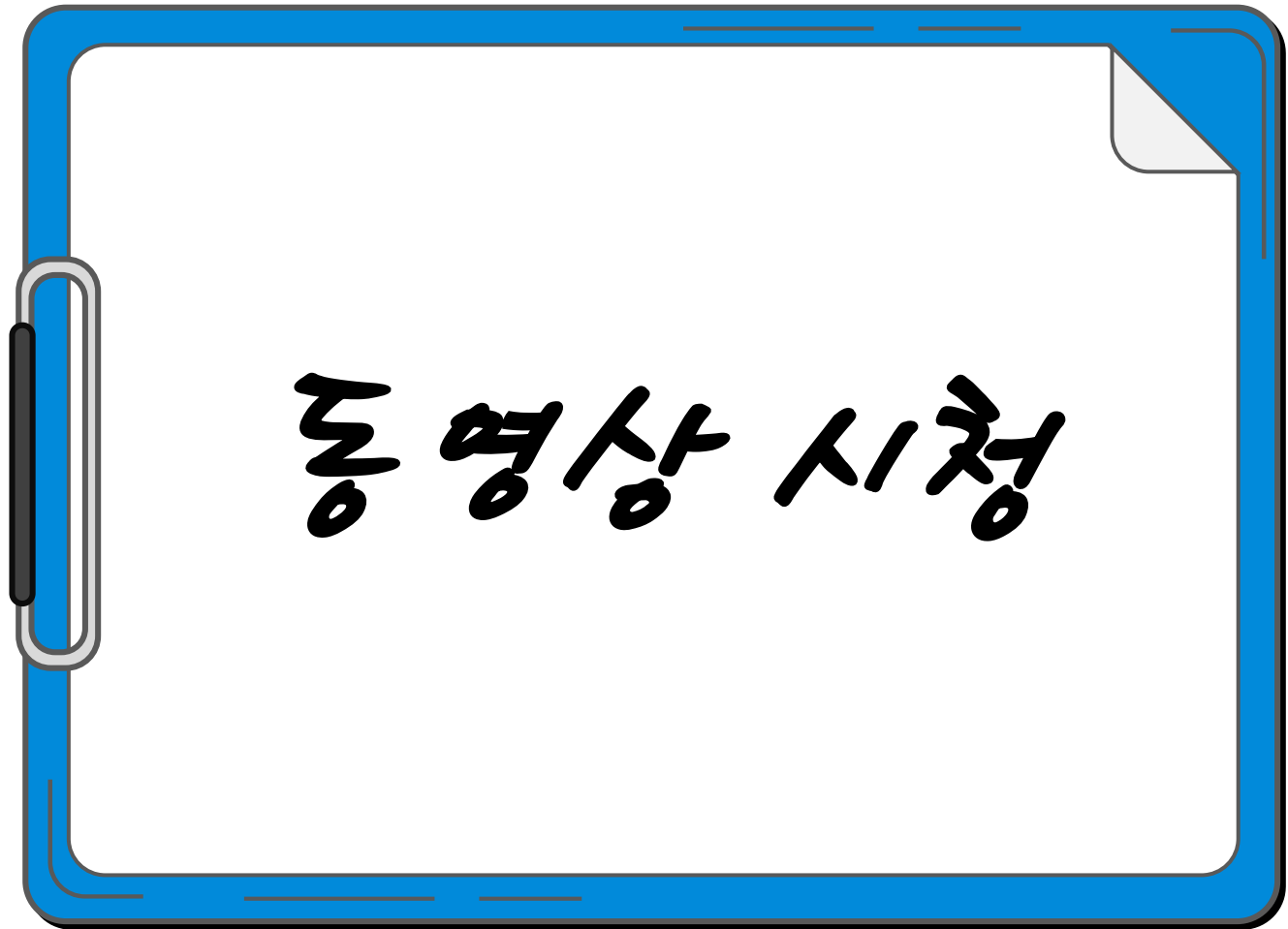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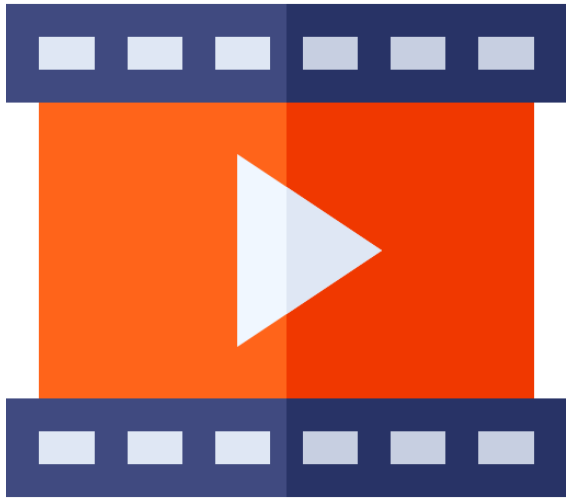
A. 진료목적 범위에 있는 예약내용의 안내, 간염1차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2차 접종을 안내하는 등 동일 진료와 연결된 예방접종 사항은 동의없이 SMS 보내는 것 가능

A. 당해진료와 관계없는 예방접종 안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SMS 보내는 방식 필요

9. 성희롱 예방교육



10.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



11. 현장실습지침서 제공



현장실습지침서 제공



감사합니다.